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263
----------	-------

발의연월일 : 2026. 9. 9.

발 의 자 : 임종득 · 김상훈 · 조배숙
고동진 · 안철수 · 조은희
김장겸 · 강명구 · 서천호
한기호 · 안상훈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자로 하여금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위생 관리와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건강 상태 기록, 소독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의 이름표가 뒤바뀌거나 영유아를 자신의 부모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인계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에도 영유아의 신원 및 임산부와 의 대응관계 식별·확인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대응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산후조리업자로 하여금 신체부착형 인식표 등 영유아의 신원 및 임산부와 의 대응관계를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수유·환복·이송하는 경우 또는 임산부에게 인계하거나 임산부로부터 인계받는 경우 등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의 신원 및 임산부와 의 대응관계를 확인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제6호 신설 등).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신체부착형 인식표 등 영유아의 신원 및 임신부와의 대응관계를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수유·환복·이송하는 경우 또는 임신부에게 인계하거나 임신부로부터 인계받는 경우 등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의 신원 및 임신부와의 대응관계를 확인할 것

제15조의8제3호 중 “제15조의4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15조의4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6호”로 한다.

제27조제1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3. 제15조의4제6호를 위반하여 영유아의 신원 및 임신부와의 대응관계를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영유아의 신원 및 임신부와의 대응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 사항) 산후조리업자는 임신부 및 영유아의 건강·위생 관리와 위해(危害)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 5. (생략) <u><신설></u>	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 사항)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u>신체부착형 인식표 등 영유아의 신원 및 임신부와의 대응관계를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수유·환복·이송하는 경우 또는 임신부에게 인계하거나 임신부로부터 인계받는 경우 등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의 신원 및 임신부와의 대응관계를 확인할 것</u>
제15조의8(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후조리업	제15조의8(시정명령) ----- ----- ----- ----- ----- -----

